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87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이정현·김 현·박홍배
강준현·손명수·정혜경
허성무·이주희·조인철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합격하여”를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이하 “학습계좌”라 한다)를 이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을 “합격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의 합격증명·성적증명 또는 이수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습계좌를 통하여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3항 중 “합격한”을 각각 “합격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u>합격하여</u>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 ----- ----- ----- <u>합격하</u> <u>거나 「평생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이하 “학</u> <u>습계좌”라 한다)를 이수하여--</u> ----- -----.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의 과목은 <u>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③ 학습계좌를 통하여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u>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관련</u> <u>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u> <u>는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u> <u>대해서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u> <u>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u> <u>영어·수학을 포함한다)을 면</u>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생 략)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생 략)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② (생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합격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

-----합격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② (현

략)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u>합격한</u>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행과 같음) ③ ----- ----- ----- ----- ----- -----<u>합격</u> <u>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u> <u>등한 학력을 인정받은</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